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772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9. 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가단517051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6. 6. 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1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6. 6.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201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4행까지의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약 4,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대납하였고, 망인이 부담할 벌과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D의 채무와 관련하여 510만 원을 대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D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룬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D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여분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이 부담할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주거나, 망인의 대출금채무의 이자 등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그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 또한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D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의사 부존재에 관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및 피고가 2017. 12. 22. D의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51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피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변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D의 이 사건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만이 있을 뿐,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별지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6.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4947.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929.9분의 39.528

